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55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2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독립유공자 및 그 유·가족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- 나. 북한이탈주민 중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.
- 다. 관내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계약대상자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를 “장애인 등”으로 표현하여 표현 간소화 도모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)
- 나. 종전의 지원대상에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·가족”과 “다문화가족”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(안 제2조)
- 다. 종전의 지원대상인 “북한이탈주민”에서 “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”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함(안 제2조)
 - ※ 보호대상자: 장애인,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,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- 라. 그 밖에 용어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4. 10. 28. ~ 2024. 11. 18. 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

나) 경 기 도 : 복지정책과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”을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·가족,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4조 중 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”을 “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”을 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”으로,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”를 “장애인 등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제1항 중 “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과” 를 “장애인 등에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·북한이탈주민 2명 이상이 신청한” 을 “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노인장애인과장 장 윤 석
	팀 장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팀장 인 우 영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 희 정(☎262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장애인 · 노인 · 한부모가족 ·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와 그 유 · 가족,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2. “노인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3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4.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5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

제4조(사전공고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장애인등록증사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허가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4조(사전공고) -----

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-----
-----.

제5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-----

-----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-----
----- 장애인 등으로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허가) ① -----

여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
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과
허가 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
가유공자와 그 유족·북한이탈주민
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
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
야 한다.

--- 장애인 등에게 -----

-----.

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
이 2명 이상인 -----

-----.

장애인복지법

제42조(생업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노인복지법

제25조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13.>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, 주차관리,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한부모가족지원법

제15조(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16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매점의 규모, 운영 및 허가·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제26조의3(생업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7조의6(생업지원)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
2. 부자(父子)가정 또는 모자(母子)가정
3.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
4.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
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인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”이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
5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의 범위)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만 해당한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3. 시에서 출자·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4.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

제4조(사전공고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
2. 장애인등록증사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허가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과 허가 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·노인·한부모가족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·북한이탈주민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자의 의무)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자가 직접 관리·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료 등)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.

제9조(설치계약 등)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10조(설치계약의 해지 등)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
3.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4.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에 따라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라 노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31., 2019.4.29.>

[전문개정 2009.12.16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(장애인,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,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)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9.4.29.]
2. “공공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가.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나. 도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[전문개정 2019.4.29.]
 - 다.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[전문개정 2019.4.29.]

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9.4.29.]

제4조(사전공고) 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(이하 “도지사 등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, 일간신문, 경기넷 등에 게재·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청)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1부
2.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우선계약) ①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0.8.>

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제7조(계약 등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관리·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계약자의 의무)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자가 직접 관리·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·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계약의 해지 등) ①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
3.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4.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 등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15.12.31.>

제10조(사용료 등)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「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 및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」 제68조의2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운영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,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중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16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등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5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5조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5.11.16.>
2. “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“부천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”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 - 나.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<개정 2015.11.16.>
 - 다.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<개정 2015.11.16., 2017.12.29.>
3. “시장등”이란 시장, 소속기관 또는 도시공사의 장을 말한다. <개정 2017.12.29.>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적용의 범위)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등이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.

② <삭제 2015.11.16.>

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,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사전공고 등)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청자격 및 제출서류)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(별지 서식) <개정 2015.11.16.>
2.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제7조(우선계약) 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

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,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8조(계약자의 의무)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)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, 관리·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설치계약의 해지)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
2.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
3.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
4.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·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
5.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삭제 <2018.8.20.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